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1571
-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제출일 : 2020년 5월 25일
- 회부일 : 2020년 5월 29일

2. 제안이유

-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지방자치단체가 무보수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0317호, 2019. 12. 31.)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시·도 심사청구 제도 폐지 등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시·도 심사청구 삭제(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 나. 세무조사 정의 신설 반영(안 제3조제4항)
- 다. 선정 대리인 신청인의 소유재산 평가방법(안 제5조의2)
- 라.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의 위촉·해촉 등(안 제5조의3)
- 마. 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안 제5조의4)
- 바.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의 정수 확대(안 제7조제2항)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 다.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 2) 입법예고('20. 2. 27.~3. 18.)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신설’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과, 시·도 심사청구 제도 폐지 등 「지방세기본법」(이하 “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 개정 사항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가.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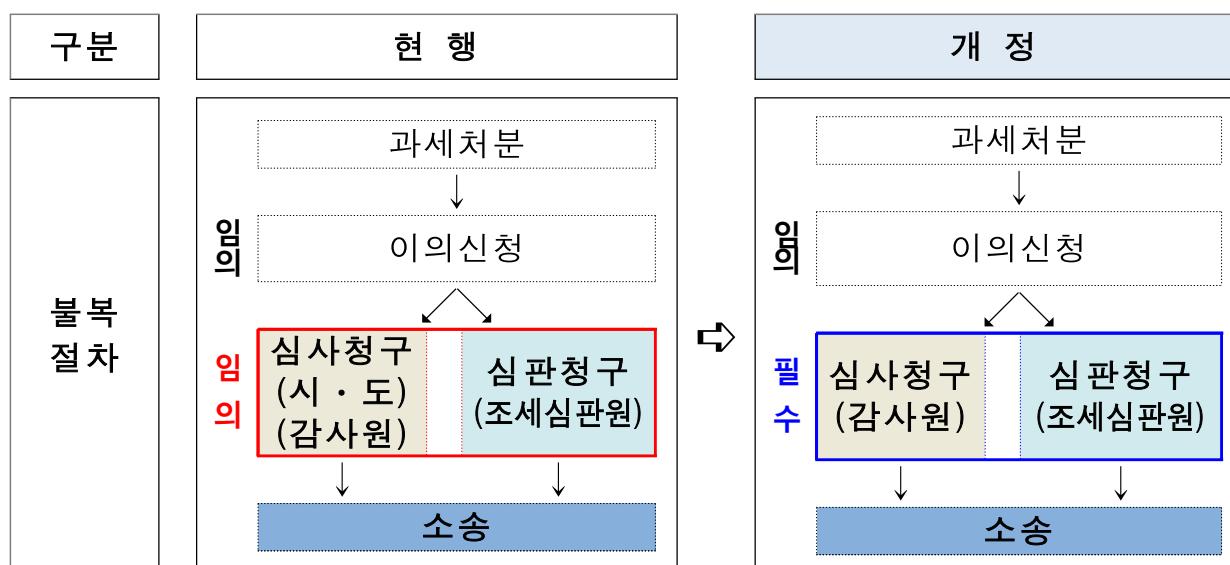
-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세무조사 시 납세자의 장부 등을 임의로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고, 지방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변호사, 회계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 개정(법률 제16854호, 2019.12.31. 공포, 2020.1.1. 및 2020.3.2. 시행) 되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및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세심의 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경우 위원 수를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 개정[시행 2020.1.1.] [대통령령 제30317호, 2019. 12. 31., 일부개정] 된바 있음.
-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관련 세부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의 정수를 확대하며, 세무조사 정의 인용사항 개정 및 시·도 심사청구 폐지한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나. 조문별 세부내용 검토

1) 시·도 심사청구 폐지 등(안 제3조제2항, 제3항)

- 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은 실제 활용률이 낮은 시·군·구세에 대한 시·도의 심사청구 제도를 폐지하여 지방세에 대한 불복절차를 단순화하고, 시·군·구세와 시·도세 간 자기시정 기회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취지의 법 개정(2019.12. 국회 제371회 정기회, 법 제91조 등)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지방세 불복절차 관련 개정 내용(2021. 1. 1. 시행) >



- 시·군·구세에 대한 시·도 심사청구 제도를 폐지하여 불복절차를 단순화
- 지방세에 대한 소송 제기 시 필요적 전치주의 재도입(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 관련 「지방세기본법」 등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 현행 심사청구는 처분청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상급 재결청에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것으로, 서울시의 경우 구청장의 구세(재산세, 등록면허세) 부과처분 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에 대하여 시장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구제 제도임.

「지방세기본법」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郡) 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레저세, 다. 담배소비세, 라. 지방소비세, 마. 주민세, 바. 지방 소득세, 사. 자동차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③ 구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면허세 2. 재산세

④ 시·군세(광역시의 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배소비세, 2. 주민세, 3. 지방소득세, 4. 재산세, 5. 자동차세

제9조(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① 특별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의 경우에 재산세(「지방세법」 제9장에 따른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와 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는 제외한다)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區)분 재산세는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8조제1항의 보통세인 특별시세로 보고 구분 재산세는 같은 조 제3항의 보통세인 구세로 본다.

③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는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세로 한다.

* 재산세 도시지역분

- 법 개정사항을 보면 제7장 제목을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라는 문구를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로 개정하는 등 법 제91조부터 제100조 사이에서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외의 “심사청구”라는 문구를 모두 삭제하여, 시·도의 심사청구 제도를 폐지하였는바, 본 개정조례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심사청구” 용어를 삭제하여 조례상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 지방세기본법_신·구조문대비표 >

종 전	현 행
<p>제91조(<u>심사청구 및 심판청구</u>)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u>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u>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u>하여야</u>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한다.</p> <p>② 제96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u>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u>를 할 수 있다.</p> <p>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u>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u>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u>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u>[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세·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p>	<p>제91조(<u>심판청구</u>) ① ----- <u>심판청구</u> -----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후단 삭제></p> <p>② ----- ----- ----- ----- <u>심판청구</u>. ③ -----<u>심판청구</u> ----- ----- -----<u>조세심판원장</u>.</p>

종 전	현 행
<u>재산세를 포함한다)에</u> 부가하여 징수하는 <u>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u> 경우에는 시·도 <u>지사에게</u>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 <u>에게</u>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① (생 략)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가. 구세에 부가 또는 함께 적어 고지되는 시세 체납액	가. (현행과 같음)
나.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다음 날 현 재 <u>소송계류</u> 중(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 청구·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확정된 시세 체납액	나. ----- - <u>소송</u> (법에 따른 이의신청·심판청구 ----- ----- 심사청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송 등”이라 한다)이 진행 중----- ----- ----- -----
다. 부과처분의 취소나 변경의 사유가 발생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 의 시세 체납액	다. (현행과 같음)
③ 고액체납액에 대해서 구청장이 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구청장이 한 처분에 대하여 <u>이의신청</u> , <u>심사청구</u> , <u>심판청구</u> 또는 <u>소송</u> 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를 수행한다.	③ ----- -----. ----- <u>소송 등</u> ----- -----.
④ (생 략)	④ (생 략)

- 한편, 시·도 심사청구 제도 폐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단순화되는 효과는 있다고 하나,
 - 자치구 지방세 처분에 대한 2019년도 서울시 심사 실적을 보면, 36건을 심사하여 7건을 구제 결정한 바 있으며, 향후 본 구제 기능을 감사원이나 조세심판원 등에서 수행하게 되는바, 지방자치단체의 대시민 행정서비스 제공 측면에 있어서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서울시 지방세 '심사청구' 처리 현황(구세)> (단위: 건/ 백만원)

연도별	합 계		인용(취소 · 경정)		기각 · 각하		인용률 (건수대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9년	36	3,424	7	3,111	29	313	19.4%
2018년	13	44	1	4	12	40	7.7%
2017년	14	232	4	168	10	64	28.6%
2016년	23	3,033	3	115	20	2,918	13.0%
2015년	8	354	1	1	7	353	12.5%

2) 세무조사 정의 신설 반영(안 제3조제4항)

- 안 제3조제4항은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본 조례에서 '세무조사'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하고 있는바, 법 개정을 통하여 세무조사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한 법 개정 조항을 인용하여 정의하려는 것임.

< 현 조례의 세무조사 정의 인용 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7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생략)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제102조부터 제10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이하 "범칙사건"이라 한다)을 조사(이하 "범칙사건조사"라 한다)하는 경우

2.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③~④) (생략)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관 련 법 령
<p>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① ~ ③ (생략) 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법 제76조</u>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조사(이하 "세무조사"라 한다)를 직접 할 수 있다. 1.~4. (생략)</p>	<p>제3조(부과·징수의 권리 위임 등) ① ~ ③ (생략) 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법 제2조</u>제1항제36호에 따른 세무조사(이하 "세무조사"라 한다)를 직접 할 수 있다. 1.~4. (현행과 같음)</p>	<p style="color: blue;">* 지방세기본법 <u>제2조(정의)</u>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31.> 1.~35. (생략) 36. "세무조사"란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 등"이라 한다)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신설></p>

3) 선정대리인 제도 도입(안 제5조의2, 안 제5조의3, 안 제5조의4)

○ 법령에서는 국세대리인 제도의 경우와 같이 영세한 납세자가 비용부담 없이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이의신청 등 지방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법 제93조의2, 영 제62조의2) 하였는바,

- 안 제5조의2부터 안 제5조의4까지는 신청인 소유재산의 평가방법, 대리인 임기·위촉·해촉 등의 사항과 대리인 신청 절차, 실비 수당 지급 등 법령에서 위임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의 예에 준하여 신설하려는 것임.

< 선정대리인 제도 신설 관련 조례 개정(안) 내용 >

신 설 조 항	내 용
§5의2(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령에 따른 시가표준액 적용
§5의3(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의 위촉·해촉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 대리인의 자격요건 · 위촉 · 임기(2년) - 선정 대리인의 해촉 사유 등 - 선정 대리인 우대 · 실비변상적 수당 지급 가능
§5의4(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인 신청 및 결과통지 서식 규칙 위임 - 시장의 협조 · 기록 · 관리 의무 등 - 구청장 요청 시 市 선정 대리인 중 추천

※ 2019.12월 지방세기본법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신설*(지방세 기본법 §93의2, 같은 법 시행령 §96의2(20.3.2.시행))

- 법령에서는 선정대리인 지원 신청 요건(법 §93의2 및 영 §62의2, 모두 충족 시 지원)으로 신청인의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액 또는 이의 신청액 1천만원 이하, 법인 및 고액체납자 제외, 일부 세목(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제외 등을 들고 있는바, 안 제5조의2는 신청인 소유 재산 가액 평가 방법을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부동산 등의 시가 표준액 규정을 준용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 · 건조 · 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

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생 략)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안 제5조의3은 법에서 정한 선정대리인 자격요건인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등 자격 요건에 더하여, 표준조례안의 예에 따라 경력 요건(3년 이상)을 추가하고, 위촉요건 및 위촉배제 사항(제1항), 임기(제3항, 2년, 1회 연임), 해촉(제4항), 기타 선정대리인 세부운영 사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 선정대리인 우대 사항(8항), 수당 지급(제9항) 등 제도 세부운영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 하려는 것임.

* 제2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세무대리) ①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 계사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다만, 선정대리인 해촉 사유를 보면, 관련 법령에 의한 징계, 금품 수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외에는, 구체적 기준 없이 ‘직무수행 불성실 또는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한바, 자의적 판단 및 운영의 우려가 있어 보이므로,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 위촉 해제 규정에 준하는 해촉 사유를 열거할 필요성은 없는지 여부와 함께, 신청에 의한 선정대리인 지정에 있어서 불복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선정대리인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 등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안 제5조의4는 대리인 선정 신청서의 제출(제1항) 및 결과통지(제2항) 등 선정대리인 운영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다만, 표준 조례안과 비교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접수 시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선정 대리인 제도를 안내도록 규정한 사항이 개정안에서는 제외되었는바, 표준안과 비교하여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재무국에서는, 영 62조의2에서 선정 대리인 신청 요건에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을 이미 규정하고 있고, 선정 대리인 신청 방법 안내 등은 신청 서식 등과 함께 관련 지침으로 운영할 사안이라는 입장임.

표 준 안(행안부)	조례 개정안
제◇◇조(선정대리인 신청 · 통지 등)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 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선정 대리인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제5조의4(선정 대리인 신청 · 통지 등) ① 대리인이 없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 중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표 준 안(행안부)	조례 개정안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 ⑥ (생략)	

- 한편, 본 선정대리인 제도 시행 시, 예상되는 선정대리인 신청 대상 건수는, 2019년 국세의 국선대리인 선정 비율에 비추어 볼 때 연간 16건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바, 대시민서비스 확대라는 측면에서 홍보 등을 통한 본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시 선정 대리인 신청 예상 건수 : 연간 약 16.4건

$$\Rightarrow 299건 * 5.5\% = 16.4건$$

* 2019년 서울시 과세전적부심(101건) 및 이의신청(198건) 건수

** 2018년 국세청 국선대리인 신청 비율

- 2018년 국세 불복청구(과제전적부심 제외) 3,823건 중 209건(5.5%) 처리
(국세 과세전적부심사는 2020년부터 국선대리인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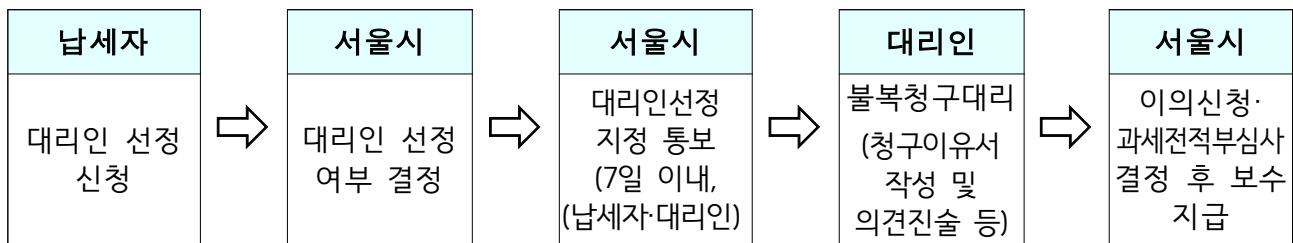
※ 국선대리인 제도 신설: 국세기본법(시행 2015.1.1.) [법률 제12848호, 2014.12.23., 일부개정]

< 최근3년간 지방세 구제업무 처리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연도별	이의신청		과세전 적부심사		심사청구(구세)		소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9년	198	75,679	101	99,429	36	3,424	342	279,315
2018년	171	21,847	85	23,456	13	44	303	469,953
2017년	200	29,319	61	52,902	14	232	343	495,176

< 최대리인 신청 방법 및 절차 >



< 대리인 지원 관련 표준조례안 대비 조례 개정안 비교표 >

표 준 안(행안부)	조례 개정안	관련법령
제□□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5조의2(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p style="color: blue;">* 지방세기본법</p> <p>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의신청인등의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 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2. 이의신청인등이 법인이 아닐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등이 아닐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청구 또는 신청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제△△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위촉·해촉 등) ① 시장은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 한정 한다.)로서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00시·도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으로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	제5조의3(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의 위촉·해촉 등) ① 시장은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로서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을 배제하여야 한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	

표 준 안(행안부)	조례 개정안	관련법령
<p>항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p> <p>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p> <p>② 선정대리인으로 위촉된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00시도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를 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선정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선정대리인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④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직무수행의 불성실 또는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선정대리인을 해촉하여야 한다.</p> <p>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해촉되는 경우에는 다른 선정대리인을 지정하여 불복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⑥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 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p> <p>⑦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p>	<p>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p> <p>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p> <p>②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된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선정 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④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직무수행의 불성실 또는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선정 대리인을 해촉하여야 한다.</p> <p>⑤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해촉되는 경우에는 다른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여 불복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⑥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 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p> <p>⑦ 선정 대리인은 불복 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p>	<p>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p> <p>2. 이의신청인등이 법 제93조의 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p> <p>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신청인등의 법 제93조의2제1항</p> <p>[본조신설 2019. 12. 31.]</p>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

리인) ① 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이의신청인등이 법 제93조의 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신청인등의 법 제93조의2제1항

표 준 안(행안부)	조례 개정안	관련법령
<p>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p> <p>⑧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위촉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⑨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 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⑧ 시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위촉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⑨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식 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p> <p>②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p> <p>1.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5천만 원(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포함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한다.</p> <p>2. 소유 재산의 가액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재산(배우자 소유 재산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평가 가액 합계액이 5억원. 다만, 지역 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p> <p>가. 「지방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p> <p>나.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p> <p>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p>
<p>제◇◇조(선정대리인 신청 · 통지 등)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 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 선정 대리인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법 제93조의2제2항</p>	<p>제5조의4(선정 대리인 신청 · 통지 등) ① 대리인이 없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 중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법 제93조의2제2항에</p>	

표 준 안(행안부)	조례 개정안	관련법령
<p>에 따른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시장은 선정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p> <p>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⑥ 시장은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장·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추천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p>	<p>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선정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p> <p>④ 시장은 선정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선정 대리인·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⑤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구청장이 대리인을 선정하고자 시장에게 선정 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빠른 시일 내에 구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p>	<p>자동차</p> <p>③ 법 제9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상습체납자 등“이란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를 말한다.</p> <p>④ 법 제9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p> <p>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대리인의 임기·위촉,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 방법·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9. 12. 31.]</p>
부 칙	부 칙	※ 지방세기본법 부칙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적용례) 제◇◇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 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2항제4호나목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 칙</p> <p><법률 제16854호, 2019. 12. 31.></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p>

표 준 안(행안부)	조례 개정안	관련법령
<p>정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 도 적용한다.</p> <p>제3조(선정대리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라 위촉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선정대리인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경우 선정대리인의 임기의 기산일은 최초 위촉된 날로 한다.</p>	<p>제2조(적용례)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p> <p>제3조(선정 대리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른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경우 선정 대리인의 임기의 기산일은 최초 위촉된 날로 한다.</p>	<p>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p> <p>1~2. (생략) 3. 제93조의2의 개정규정: 2020년 3월 2일</p> <p>제10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2일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2020년 3월 2일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p>

4)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의 정수 확대(안 제7조제2항 신설)

-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법 제147조에 근거한 법정 위원회로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체납자 체납정보 공개,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기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등 지방세 관련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있으며,
- 영 제83조(제1항 제1호)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으나,
- 영 개정[시행 2020.1.1., 대통령령 제30317호, 2019.12.31., 일부개정]을 통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의 정수를 10명의 범위에서 더 늘릴 수 있도록 규정한바, 이를 본 조례에서는 위원 정수를 35명 이내로 규정하려는 것임.

- 다만, 현행 25명에서 35명으로 확대하는 것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인지 논의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요>

○ 지방세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 근거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

○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 기 능

- 이의신청(심사청구) · 과세전적부심사 사건에 대한 심의·의결
-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구 성 : 총 25인, 이의신청심의 분과 · 과세전적부심사 분과로 나누어 운영

- 위촉위원(22) : 부장판사(위원장)1, 변호사4, 회계사8, 세무사8, 교수1
- 내부위원 (3) : 재무국장, 세제과장, 세무과장
- 회의진행 : 위촉위원을 2개 분과로 나누어 매월 각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운영
(월1회 개최)
 - 이의신청회의 : 위원 호선으로 선출된 위원장(부장판사)이 회의 주재
 - 공개세무법정 : 이의신청 중요사건 공개심리(신청인, 처분청, 방청객)
- 심의의결 : 참석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인용, 기각, 각하)

< 지방세기본법시행령_신·구조문대비표 >

종 전	현 행
제83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 한다.	제83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 한다.

종 전	현 행
<p>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등"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단서 신설></p> <p>2. 시·군·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단서 신설></p> <p>②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 전체 위원으로부터 호선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p> <p>1. 시·도등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실장·국장 또는 본부장이 된다.</p> <p>2. 시·군·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실장 또는 국장(실장 및 국장이 없는 시·군·구의 경우에는 과장 또는 담당관을 말한다)이 된다.</p> <p>③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p> <p>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 가. 시·도등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p>	<p>1.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등"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u>다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의 정수를 10명의 범위에서 더 늘릴 수 있다.</u></p> <p>2. 시·군·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u>다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의 정수를 6명의 범위에서 더 늘릴 수 있다.</u></p> <p>②~⑥ (현행과 같음)</p>

종 전	현 행
<p>나. 시·군·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p> <p>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직(職)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p> <p>3. 대학에서 법학, 회계학, 세무학 또는 부동산 평가학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p> <p>4. 그 밖에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⑤ 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p> <p>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p>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영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35명 이내로 한다.</p>

전 문 위 원	김 태 한	입법조사관	최 석 훈
---------	-------	-------	-------

참 고 자 료

- 시세 기본 조례 개정안 신·구조문 및 관련 법령 개정사항 비교표 -

현 행	개 정 안	관 련 법 령
<p>제3조(부과 · 징수의 권한 위임 등) ① (생략) ② (생략)</p> <p>4.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 현재 건당 1천만 원 이상 체납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있는 체납자의 해당 구 시세 체납액 전부(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세 체납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고액체납액”이라 한다)</p> <p>나.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다음 날 현재 <u>소송계류</u> 중(법에 따른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가</p>	<p>제3조(부과 · 징수의 권한 위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4. ----- ----- ----- ----- ----- ----- ----- -----</p> <p>나.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다음 날 현재 <u>소송(법에 따른 이의신청 · 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포함한다.</u> 이하 이 조에</p>	<p>* 지방세기본법</p> <p>제91조(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p> <p>② 제96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p> <p>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p>

현 행	개 정 안	관 련 법 령
<p><u>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확정된 시세 체납액</u></p> <p>③ 고액체납액에 대해서 구청장이 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구청장이 한 처분에 대하여 <u>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소송</u>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를 수행한다.</p> <p>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법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조사</u>(이하 “세무조사”라 한다)를 직접 할 수 있다.</p>	<p><u>서 “소송 등”이라 한다)이 진행 중</u> 이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확정된 시세 체납액</p> <p>③ 고액체납액에 대해서 구청장이 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구청장이 한 처분에 대하여 <u>소송 등</u>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를 수행한다.</p> <p>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법 제2조제1항제36호에 따른 세무조사</u>(이하 “세무조사”라 한다)를 직접 할 수 있다.</p>	<p>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제목개정 2019. 12. 31.] [시행일 : 2021. 1. 1.] 제91조</p> <p>* 지방세기본법</p> <p>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7. 26., 2018. 12. 24., 2019. 12. 31.></p> <p>36. “세무조사”란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p>

현 행	개 정 안	관 련 법 령
<u>〈신 설〉</u>	<p><u>제5조의2(소유 재산의 평가방법)</u>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p>	<p>※ 지방세기본법</p>
<u>〈신 설〉</u>	<p><u>제5조의3(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의 위촉·해촉 등)</u> ① 시장은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로서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을 배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 	<p>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의신청인등의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2. 이의신청인등이 법인이 아닐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등이 아닐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청구 또는 신청일 것

현 행	개 정 안	관 련 법 령
	<p>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p> <p>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p> <p>②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된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선정 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④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직무수행의 불성실 또는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선정 대리인을 해촉하여야 한다.</p> <p>⑤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해촉되는 경우에는 다른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여 불복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p>	<p>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청구 또는 신청일 것</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자체 없이 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등과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93조제4항을 준용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 관리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9. 12. 31.]</p> <p>* 지방세기본법 시행령</p> <p>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p> <p>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p>

현 행	개 정 안	관 련 법 령
<p style="color: blue; font-style: italic;">〈신 설〉</p>	<p>⑥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 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p> <p>⑦ 선정 대리인은 불복 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p> <p>⑧ 시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위촉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⑨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5조의4(선정 대리인 신청 · 통지 등) ① 대리인이 없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p>	<p>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p> <p>2. 이의신청인등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p> <p>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신청인등의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p> <p>②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p> <p>1.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5천만원(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포함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전 과</p>

현 행	개 정 안	관 련 법 령
	<p>한다.) 중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 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선정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자체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p> <p>④ 시장은 선정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 · 불복청구인 · 선정 대리인 지정일자 · 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p> <p>⑤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구청장이 대리인을 선정하고자 시장에게 선정 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빠른</p>	<p>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한다.</p> <p>2. 소유 재산의 가액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재산(배우자 소유 재산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평가 가액 합계액이 5억 원. 다만, 지역 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p> <p>가. 「지방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p> <p>나.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p> <p>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p> <p>③ 법 제9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고액 · 상습체납자 등“이</p>

현 행	개 정 안	관 련 법 령
	<p>시일 내에 구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p>	<p>란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 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를 말한다.</p> <p>④ 법 제9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p> <p>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대리인의 임기·위촉,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 방법·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9. 12. 31.]</p>

현 행	개 정 안	관 련 법 령
<p>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생 랴) <u>〈신 설〉</u></p>	<p>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 (현행 제목 외 의 부분과 같음)</p> <p><u>② 영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35명 이내로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u>제1조(시행일)</u>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4호나목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p> <p><u>제2조(적용례)</u>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 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p>	<p>* 지방세기본법 시행령</p> <p>제83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 방세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7. 12. 29., 201 9. 12. 31.›</p> <p>1.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등”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u>다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의 정수를 10명의 범위에서 더 늘릴 수 있다.</u></p> <p>* 지방세기본법 부칙</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법률 제16854호, 2019. 12. 31.›</p> <p><u>제1조(시행일)</u>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 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p>

현 행	개 정 안	관 련 법 령
	<p>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p> <p>제3조(선정 대리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른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p> <p>② 이 경우 선정 대리인의 임기의 기산일은 최초 위촉된 날로 한다.</p>	<p>다.</p> <p>2. … (생략) … <u>제91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생략) … 제152조의2제4호(심사청구 제도 폐지와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u></p>